

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12. 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11월 20일,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0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(2017년 12월 7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이준범

가. 제안이유

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금치산·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한정후견·성년후견제가 시행됨으로써 조례에 규정된 금치산·한정치산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임원 결격사유 개정
-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본 조례안은

조례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·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으로 하는 등 현행 상위법 등에 적합하도록 하고,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